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복지문화 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7.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 제출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3.(수) ~ 2025. 9. 12.(금)

2. 제안이유

○ 달서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을 마련하고자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을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간으로 건립됨에 따라,

○ 「지역문화진흥법」,「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소 재 지	규모(주요시설)	위탁금액	운영 인력	비고 (개소일)
달서생활문화센터 (월배점)	상화로21길 77 (진천동)	·지상 4층, 연면적 969㎡ ·프로그램실,다목적홀, 동아리실 등	6,000만원 정도 (구비)	1명 (기간제)	2026. 1. (예정)

※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지하1층~지상3층,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 4층

※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3개소
- 장기점(달서아트센터 본관 1층), 송현점(디지털 별빛관 포함, 달서별빛캠프 진입로)
월성점(월성1동 복합청사 3층)

나.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대관 등 행정업무 전반
-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세대간 교류,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위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간 : 4년 8개월(2026. 1. 1. ~2030. 8. 10.)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4. 관련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 11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5. 검토의견

○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으로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가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간으로 건립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달서생활문화센터(월배점)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등 위탁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활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사업”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원이 축적된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 위탁사무 수행 관련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
3.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동아리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